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4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서영교·추미애·박홍배

임오경 · 박희승 · 허 영

이해식 • 한정애 • 윤준병

박균택・위성곤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으로 군인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 사법원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 대범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생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			
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		
	호의 아동학대범죄		
<u>2.</u> · <u>3.</u> (생 략)	<u>3.·4.</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